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확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